

사 회 복 지 국

1996년도제1회총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996. 5

교 육 사 회 위 원 회
전 문 위 원

I. 일반회계

1. 예산안 총괄
 - 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나. 사회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2. 예산안 개요
3. 검토 의견

II. 특별회계

1. 예산안 총괄
 - 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 예산안 규모
 - 나.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 예산안 규모
2. 예산안 개요
3. 검토 의견

※ 참고자료 : 심의 및 부속서류 참고

I. 일반회계

1. 예산안 총괄

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 위 : 천 원)

경 비 별	예 산 안	%	기 정	%	증 △ 감	%
	금 액	%	예 산 액	%	금 액	%
합 계	652,952,861	100.0	587,701,886	100.0	65,250,975	11.1
인 건 비	48,914,524	7.5	47,953,067	8.2	961,457	2.0
물 건 비	43,204,826	6.6	40,306,217	6.9	2,898,609	7.2
이 전 경 비	146,941,368	22.5	135,063,106	22.9	11,878,262	8.8
자 본 지 출	380,337,813	58.3	339,447,547	57.8	40,890,266	12.1
용 자 및 출 자	9,660,000	1.4	7,584,000	1.3	2,076,000	27.4
보 전 재 원	2,320,027	0.4	2,320,027	0.4	0	0.0
내 부 거 래	12,555,611	1.9	6,356,776	1.1	6,198,835	97.5
예 비 비 및 기 타	9,018,692	1.4	8,671,146	1.4	347,546	4.0

- 충청북도 일반회계 '96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877억 1백만원 대비 11.1%인 652억 5천만원이 증액된 6,529억 5천 2백만원임.

나. 사회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 위 : 천 원)

경 비 별	예 산 안	%	기 정	%	1 회 추 경	%
	금 액	%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61,669,325	100.0	59,977,243	100.0	1,692,082	2.8
인 건 비	308,151	0.5	307,662	0.5	△ 489	0.2
물 건 비	614,455	1.0	582,976	1.0	31,479	5.4
이 전 경 비	45,440,720	73.7	46,132,099	76.9	△ 691,379	△ 1.5
자 본 지 출	10,817,416	17.5	9,049,415	15.1	1,768,001	19.5
내 부 거 래	4,488,583	7.3	3,905,091	6.5	583,492	14.9

2. 예산안 개요

1996년도 제1회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597억 7천 7백만원 대비 2.8%인 16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616억 6천 9백만원 임

품목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

첫째, 인건비 48만 9천원은 여성회관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으로 계상된 것임

둘째, 물건비는 3천 1백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단 위 : 천 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
- 관서당 경비 14,400
-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000
- 공공요금 및 제세 11,079
-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0

등이 각각 증액되었음

셋째, 이전경비는 6억 9천 1백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

(단 위 : 천 원)

- 보 상 금 200 (국비 760)
- 민간경상보조 △ 35,781 (국비 △ 47,918, 기금 27,762)
- 자치단체 경상보조 △ 655,798 (국비 △ 623,927, 기금 △ 60,277)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되었음

넷째, 자본지출은 17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단 위 : 천 원)

- 기본조사 설계비 42,167 (국비 18,405)
- 실 시 설 계 비 39,202 (국비 29,602)
- 토 지 매 입 비 1,048,751
- 시 설 비 1,111,232(국비 402,443)
- 시 설 부 대 비 6,369
- 감 리 비 8,400
- 민간자본이전 320,000 (기금 70,000)
- 자치단체 자본보조 △ 808,120 (국비 △ 261,550, 기금 27,500)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되었음

다섯째, 내부거래 5억 8천 3백만원은 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으로 증액된 것임

3. 검토 의견

1996년도 제1회 사회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16억 6천 9백만원 규모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529억 5천 2백만원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소관 당초예산안 597억 7천 7백만원에 비해 2.8%에 해당하는 16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중앙기금사업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장애인 체육관 건립 및 부랑인 보호등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가정복지분야, 여성회관 신축등 부녀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긴급적 수정예산을 통하여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해원장애인복지관내 목욕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 시설내의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특수설비등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텐데, 예측 부족은 아닌지? (p191)
-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등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00~201)
-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과 관련 구의료원 건물 철거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 행정 전반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함이 바람직 할 것임 (p203)
- 성폭력상담소운영비 4천 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된 것으로 국고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사료됨 (p206)
-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진입로 토지매입비등 3억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여성회관 신축공사의 진척 상황과 예산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07)

II. 특별회계

1. 예산안 총괄

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안 규모

(단 위 : 천 원)

과 목 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계	19,005,612	15,820,457	3,185,155	
□ 사업수입	4,251,279	3,400,091	851,188	
순세계잉여금	406,904	160,000	246,904	순세계 잉여금
용자금회수수입	9,000	9,000	-	
전 입 금	3,688,583	3,105,091	583,492	도비부담금(20%)
잡 수 입	146,792	126,000	20,792	시군결산반환금
□ 국고보조금	14,754,333	12,420,366	2,333,967	
국 고 보 조 금	14,754,333	12,420,366	2,333,967	국고보조금(80%)

나.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안 규모

(단 위 : 천 원)

과 목 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계	19,005,612	15,820,457	3,185,155	
□ 관 리 비	89,918	79,477	10,441	
경 상 적 경 비	17,480	11,480	6,000	여비3.0 프린터3.0
자 체 사 업	72,438	67,997	4,441	시군사무비 보조
□ 사 업 비	18,481,574	15,564,116	2,917,458	
경 상 적 경 비	96,795	96,795	-	국고보조금(8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18,129,155	15,211,696	2,917,459	시군의료보호진료비 보조
용 자 금	255,624	255,624	-	
□ 예 비 비	434,120	176,864	257,256	
예 비 비	434,120	176,864	257,256	

2. 예산안 개요

1996년도 제1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190억 5백만원 규모로 당초 예산액 158억 2천만원에 비해 20.1%인 31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세 입)

(단 위 : 천 원)

- 사업외 수입 8억 5천 1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246,904
 -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금 583,492
 - 시군결산 반환금 20,792

- 국고보조금(의료보호사업비) 23억 3천 3백만원

(세 출)

(단 위 : 천 원)

- 관 리 비 1천만원
 - 경상적 경비 6,000
 - 자체사업(시군의료보호 사무비 보조) 4,441

- 사 업 비 29억 3천 3백만원
 - 시군의료보호진료비 보조 2,917,459

- 예 비 비 2억 5천 7백만원

3. 검토 의견

1996년도 제1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액으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